



» 입법예고

**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**

(건설교통부공고 제2005-44호, 2005.2.22)

**개정이유**

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 및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·우수감리원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,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·설계자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허위로 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*주요내용**

- 가.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자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상 공사를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고, 설계감리대상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2중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확대
- 나.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도록 함
- 다.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을 중·소규모 건설공사로 확대하고,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강화
- 라.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허위로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하는 행위등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
- 마. 발주청으로 하여금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, 시공감리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
- 바.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감리, 소방감리, 전력시설물 감리, 통신감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·관리하는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

사.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책임감리 용역평가의 대상·실시시기, 평가결과 우수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요건, 지정 취소절차 등을 규정  
아. 감리전문회사 등록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**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**

(건설교통부공고 제2005-45호, 2005.2.22)

**개정이유**

설계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고, 건설공사 부실축정에 따른 부실벌점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점부과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비계상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*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(노동부공고 제2005-15호, 2005.2.23)

**개정이유 및 주요골자**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방식을 공제증지 구입·첨부 방식에서 전산관리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

**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(노동부공고 제2005-16호, 2005.2.23)



**개정이유**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 관리를 전산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수첩 재발급 및 근로일수 산정 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**주요골자**

- 가. 근로내역신고서를 복지수첩발급신청서로 볼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단서)
- 나.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자진납부 함에 따른 공제 부금 납부일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산정기준 등을 정함(안 제11조).
- 다. 과태료 징수절차의 준용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함(안 제19조)

**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 개정령(안)**  
**입법예고**  
(건설교통부공고 제2005-60호, 2005.2.28)

**개정이유**

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*주요골자**

- 가.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제재토록 함(안 제5조제2항 별표제2호나목 신설)
- 나.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 또는 재산상의 자료 제출,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

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부동산투자회사등을 제재토록 함(안 제5조제2항 별표제2호라목 신설)

**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**  
**입법예고**  
(건설교통부공고 제2005-62호, 2005.3.3)

**개정이유**

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('04.12.31 공포, 법률 제7306호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*주요내용**

- 가.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완화
  - (1)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업종선택을 제한하고,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, 다양한 영업활동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  - (2) 일반건설업자의 전문건설업종 겸업가능업종에 상수도설비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,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을 추가하고, 전문건설업자의 소규모 복합공사 원도급허용범위를 현행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함
  - (3)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건설공사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건설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건설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
- 나. 4대보험 소요비용 등 건설공사 원가 반영
  - (1)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관련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가입을 회피하

- 고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
- (2)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보험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의 실제 소요비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반영비용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, 발주자는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초과 지급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
  - (3) 4대보험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한 대금지급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·하수급인간 비용전가 등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, 4대보험 가입률 등을 제고함으로써 일용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다.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및 직접시공비율 설정

- (1) 소규모 공사의 경우 입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전매 및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일삼는 입찰브로커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퇴출하려는 것임
- (2)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30억미만 공사로 하고, 직접시공비율을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공사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함
- (3)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는 퇴출하고 직접시공이 가능한 견실한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

라.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계획·관리 및 조정의 범위 명확화

- (1)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·관리 및 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
- (2) 건설공사의 계획·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·자재·장비·자금 등의 관리 및 시공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, 시공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·시행토록 함
- (3) 계획·관리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사 수주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·부실 건설업

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

**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  
입법예고**

(건설교통부공고 제2005-63호, 2005.3.3)

**개정이유**

건설업 폐업신고제도 신설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( '04.12.31 공포, 법률 제7306호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**주요골자**

가.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의 통보

- 공사수주후 일괄하도급하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30억 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직접시공할 공사와 하도급할 공사를 분리하여 통보토록 함

나. 건설업 폐업신고 방안 마련

- 건설업 폐업신고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서 서식 등 폐업신고 절차를 마련함

다.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완화

- 공공공사 낙찰률이 대부분 88%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공공공사중 88%미만 낙찰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허용하던 것을 82%미만 낙찰공사로 하향조정함

라.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요건 완화

- 수급인이 3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나,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4천만원이상 하도급계약시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토록 그 요건을 완화함 